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8. 16 선고 2022가단120215(본소), 2022가단131765(반소)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주, 이승훈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호성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4. 14.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91,189,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23.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경영 컨설팅 등을 업으로 하며 ‘C필라테스’ 가맹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22. 2. 17.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투자금 250,000,000원(보증금 포함), 사전영업(프리세일) 기간 총 매출의 50%를 시설투자에 사용하되, 매장을 원고가 직접 위탁운영(매출의 10%를 운영비로 사용)하는 Type A 방식의 ‘C필라테스’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특약사항으로 가맹 투자금 중 가 계약금 1,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 입금 후 2/25까지 계약금 8,000만 원을 입금하고, 이후 잔금은 본사와 협의 하에 3월 31일 전까지는 전액 입금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과 함께 매장에 대한 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장 위탁운영 계약서

2. 계약내용

제3조 : 을(피고, 이하 같다)은 갑(원고, 이하 같다)의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며, 본 계약기간 중 갑이 위탁운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품비, 운영비, 부가가치세, 종 소세 등의 세금,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은 갑이 을의 비용으로 부담하며, 세금신고는 갑의 명의로 신고하기로 한다.

제4조 : 갑은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고객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VAT별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을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갑에게 모든 운영 권한을 위임한다.

라.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피고는 2022. 2. 7. 가계약금 10,000,000원, 2022. 2. 17. 20,000,000원, 2022. 2. 25. 80,000,000원을 각 가맹금으로 지급하였고, 2022. 4. 7.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을 포함한 합계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마.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초기 투자금 250,000,000원 이외에도 나머지 초기 시설투자비용 및 사전영업(프리세일) 이후 본 운영에 있어 발생하는 운영비 등 제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피고는 2022. 2. 7.부터 2022. 4. 7.까지 합계 210,000,000원만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사전영업(프리세일)으로 81,996,364원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시설비용 등 초도비용으로 236,287,149원 및 상가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운영비 등으로 2022. 8. 12. 기준 37,552,649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373,839,798원을 피고들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1,189,149원(= 373,839,798원 - 210,000,000원 - 81,996,364원 / 2)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본소청구에 대한 답변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사업법 소정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의 장래 예상수익 상황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고를 기망하였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동시에 체결된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 월 2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고객 결제액의 10%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지금까지 정산보고서조차 교부하지 않고 있는바, 2022. 10. 13.자 답변서 부분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 및 매장 위탁계약을 각 해제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2023. 4. 2. 기준으로 원고가 관리하는 지점이 모두 피고 등의 동의 없이 휴점 상태가 되었는바, 2023. 4.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거래재개를 요청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에 대한 앞서 본 본소청구에 대한 답변 내용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기한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나아가 원고가 관리하는 지점의 영업이 중단됨으로써 더 이상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2023. 4.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 제15조 제7항에 따라 그 배상을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금으로 2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당시 사전영업(프리세일)기간 매출의 50%를 초도비용 부족분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프리세일기간 81,996,364원의 매출을 달성하여 그 중 50%인 40,998,182원을 원고가 초도비용으로 충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가 위 금액 이외에 원고 주장의 초기투자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매장 위탁계약서에는 원고는 익월 20일까지 정산보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고, 고객 결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매출보고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에 따른 정산보고 의무 및 정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갑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산보고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피고가 2022. 10. 13.자 답변서를 통하여 원고의 매장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가맹계약 및 매장 위탁운영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 사건 가맹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원고가 주장하는 초기투자비용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5호증, 을6호증의 1, 2, 3, 을7호증의 1, 2, 3, 을8호증, 을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운영하던 C필라테스 가맹점의 경우 D뉴스가 방영된 2023. 4. 2. 이전에 휴점 상태에 돌입하였고, 이 사건 가맹점이 위치한 건물의 관리인들에 따르면 이 사건 가맹점은 2023. 3. 초순경 이미 폐업상태에 돌입하여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2023. 4. 22.경 이 사건 가맹점 내 헬스장비 및 필라테스 기구들을 반출하다가 적발되기도 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0조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 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의 휴업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바가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한 이상 2023. 4.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가맹금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가맹금 2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지급받은 가맹금은 모두 가맹계약 및 위탁영업계약 및 투자계약에 따라 피고의 사업장개설 및 운영유지에 사용된 이상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사용한 가맹금의 귀속처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가맹금으로 원고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기구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 소유권 및 사용권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이 사건에 있어 이를 근거로 가맹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가맹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10조를 근거로 가맹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2023. 4. 13.자 준비서면이 송달된 2023. 4. 1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8.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2022. 12. 26.자 반소장 부분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2023. 4. 1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청구원인을 변경한 이상 변경된 청구원인을 기준으로 지연손해를 정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8.3, 2013.8.13>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1.31>
-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1.31>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1.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31.>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시행령 제11조(가맹사업의 중단일)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

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